

# 8층 병동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 총 무 과 시 설 계 )

## 1. 과업명칭

- 8층 병동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 2. 과업의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본관 8층 입원병동은 1999년 건립하여 운영 중인 입원병동 중 2008년 재활병동 전환사업으로 8층 병동을 리모델링 하였으나,
- 당시 재활병동 목적으로 리모델링 하여, 18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는 재활 목적보다 정형외과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통해 병동 운영시 인력 배치 등 효율성을 강화하고,
- 8층 전체병동은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시설이용에 많은 불편 및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감염예방 및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8층 입원병동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 3. 과업의 개요 및 범위

### 가. 과업개요

-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정로 365(본관 8층)
- 2) 대지면적 : 109,152㎡(부지전체면적)
- 3) 8층 병동 리모델링공사 규모

가) 본관 연면적 : 35,007.51㎡중 일부 2,178.60㎡  
- 8층 전체면적 : 2,178.60㎡

나) 예정 공사비 : 금4,284,000천원(부가세포함)

다) 추정 설계비 : 금312,411천원(부가세포함)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폐기물처리, 조사비용, 보험료, 인·허가 수수료 등 본 설계를 위한 제반 비용 일체를 포함.

라)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공휴일 포함, 단, 심의시간 제외)

※ 서류제출 후 사전심의 및 인·허가 기간 제외, 설계규모(사업비 4,284,000천원 한도내)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 나. 과업의 범위

- 1) 본 과업내용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계획서에 의한 세부 계획에 따라 8층 병동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 2) 과업의 범위는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폐기물처리 등의 전분야를 총망라한 일체의 설계로 하되,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통신분야는 정보통신 공사업에 의거 설계용역을 하도록 한다.
- 3) 사업계획은
  - 가) 8층 병동 각 실의 기능 및 구조를 조정하여 적절한 평면계획 제안과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
  - 나) 노후 기계, 전기설비 교체 및 신설(냉·난방시스템설치, 노후배관교체, LED등 교체, 너스쿨교체, CCTV 교체, 입원환자 현황시스템 구축 등)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
  - 다) 각 종 평가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설계 반영
  - 라) 건축 관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마)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 구분   |          | 주요내용                                                                                                                                                                                                                           | 비고 |
|------|----------|--------------------------------------------------------------------------------------------------------------------------------------------------------------------------------------------------------------------------------|----|
| 건축   | 8층 병동 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실의 기능 및 구조를 조정하여 적절한 평면계획안 제안(인테리어 포함)</li> <li>◦ 각 실 및 입원병실의 기능에 맞도록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설치방안 마련</li> <li>◦ 배연창 교체</li> </ul>                                                             |    |
|      | E/V 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대(중앙 E/V 4대, 동·서측 E/V 2대, 외래전용 1대) 중 동·서측 E/V 2대 교체</li> </ul>                                                                                                                       |    |
| 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대응 환기시스템 계획(층별, 구역별)</li> <li>◦ 냉·난방 시스템 설치</li> <li>◦ 노후 장비(고효율) 및 기구(친환경·절수형)교체</li> <li>◦ 노후배관 교체</li> </ul>                                                                   |    |
| 전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효율 LED조명 교체</li> <li>◦ 배선기구 교체</li> <li>◦ 취침조명 설치</li> <li>◦ EPS실 분전반 교체</li> </ul>                                                                                                  |    |
| 통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시설(무선통신 IOT 정보통신기술 등) 인프라 구축</li> <li>◦ 너스콜 교체</li> <li>◦ 와이파이 및 비콘(블루투스) 인프라 구축</li> <li>◦ 병동 CCTV(RTLS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li> <li>◦ 병실 입원환자 현황 시스템 구축</li> <li>◦ 기송관 시스템 구축</li> </ul> |    |
| 소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 구축</li> </ul>                                                                                                                                                                    |    |
| 기타공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공사, 기타 부대공사, <u>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u> 등</li> </ul>                                                                                                                                     |    |

※ 관련자료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계획서 참조

바) 세부사업범위는 설계 협의과정에서 발주처, 사업지원단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4) 과업 계획 기본방향

가) 8층 병동 기능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성능개선 및 노후 설비 등 교체로 인한 시설의 전반적인 기능회복을 위한 보수, 보강

(1) 건축부문 시설보강

- (가) 8층 병동 각 실의 기능 및 구조를 조정하여 적절한 평면계획(인테리어 포함)
- (나) 각 실 및 입원병실의 기능에 맞도록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설치방안 마련
- (다) 병동 배연창 교체
- (라)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2)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시설보강

- (가) 냉·난방 시스템 설치
- (나) 환기장치는 기존 시스템을 고려하여 적용(감염병 대응 환기시스템 적용 반영)
- (다) 노후 장비(고효율) 및 기구(친환경·절수형)교체
- (라) 노후배관 교체
- (마) 고효율 LED 조명 교체
- (바) 배선기구 교체
- (사) 취침조명 설치
- (아) EPS실 분전반 교체
- (자) 통신시설(무선통신 IOT 정보통신기술 등) 인프라 구축
- (차) 너스콜 교체
- (카) 와이파이 및 비콘(블루투스) 인프라 구축
- (타) 병동 CCTV(RTLS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파) 입원환자 현황 시스템 구축
- (하) 소방시설 구축

5) 과업의 수행

가) 본 과업은 8층 병동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으로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8층 병동 전반적인 시설 환경개선, 노후 설비 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건축물로 변화시켜 입원환자 및 의료 인력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 8층 병동 건축물의 현황조사 및 진단

- (가) 기존 설비의 노후화 등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 (나) 전문기관의 진단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설계

(2) 발주처의 사업계획 및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계획안 제안 및 수립

(3) 8층 병동 리모델링 설계 관련 인허가의 수행(필요시)

(4) 친환경 설비 도입에 따른 타당성 분석 및 유지관리 계획

- (가) 설비도입 기능별 비용 및 에너지성능 개선을 분석
- (나) 설비도입에 따른 에너지, 운영, 유지보수 비용 절감 LCC 분석
- (다) 설비유지관리 매뉴얼 작성(설비도입 후 지속적으로 에너지, 운영, 유지보수 비용 절감토록 계획)

(5)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설비 및 구조보강 설계

(6) 주변 시설 및 각종 설비와의 연관성의 고려

- (가) 발주처의 사업계획에 따른 철저한 사전조사 시행
- (나) 본원의 각종 건물 및 설비 등 관련 전체 시스템의 고려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결성을 반영하여 설계

- (7) 기존 시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설계
  - (8) 적정 공사비의 산정
    - (가) 공사원가 작성원칙 준수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발주방식에 맞게 공사내역서를 작성 및 수정
    - (나) 관급자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내역서의 작성
  - (9)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나) 본 과업은 8층 병동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의 설계용역으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 (도면, 시방, 각종 계산서 등)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적극 조사하여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다) 공사에 따른 제반 법규 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 협의, 인.허가 처리(최종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공사와 관련한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고,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라)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사업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협조(회의, 자료제출, 협의결과 반영 등)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마)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테리어 공사에 적합한 설계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테리어 영역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 지정)
- 바)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인의 협의 하에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 6) 공사 시공시 필요한 일체의 용역설계를 위 범위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건축, 소방 등 각종 협의, 심의, 허가 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및 제출자료 와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7) 건축설계도서는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와 실시설계도서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기술지원단의 자문위원, 사전심의, 최종검토를 득한 후 진행한다.
  - 8) 각 단계별 심의 요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각 단계별 해당되는 제출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심의단계에서 제시한 의견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며 각 단계별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지원단(이하 사업기술지원단)의 업무절체에 따른다.
  - 8) 본 용역의 종료시기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에 대한 보완까지로 하되, 수급인은 공사시행중 공사상 필요한 도면 수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료제출 요구시 지시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 9) 예정 공사비 4,284,000천원(부가세 포함)범위내에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과업내용

- 1) 조사 및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 2) 실시설계 (공종별 상세설계 등)
- 3) 설계서 및 보고서 작성등

## 라. 과업기간

- 1)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0일간(공휴일 포함, 단, 심의기간 제외)

### ※ 서류제출 후 사전심의 및 인·허가 기간 제외.

- 가)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는 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완료한 후 건축기본설계를 남원의료원 및 사업기술지원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에 임해야 한다.
- 나) 실시설계는 1차 심의를 득한 후 시작하며 건축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완료일까지의 40일간으로 하며 남원의료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수급인은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에 따른 모든 요구자료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기술지원단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설계용역 완료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될 경우
  - 나)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4. 일반사항

###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착수보고서
    -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2) 예정공정표
    - (3) 내역서
  -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 다) 보안각서
  - 라)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2) 수급인은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가) 준공기한 연기원
  - 나) 준공검사원
  - 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나. 과업수행계획서

-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2) 각 관련주체(건축, 구조,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인테리어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 3)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가) 전문분야별 기술자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공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건설업체 등도 포함 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4) 용역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전문분야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 첨부한다.

- 5)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소지자(전기분야 : 전력기술관리법 의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 소방분야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설계업등록 필한 자, 건축구조 :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업체등)의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수행토록하되, 건축사가 총괄하여야 한다.
- 6) 목표예산(공사비 : 4,284백만원)을 고려한 설계운영계획
  - 가) 발주처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여 부실설계와 시공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한다.
  - 나)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 6)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다. 업무협의

- 1)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처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 나)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단계 시
  - 다) 실시설계 완료단계 시
  - 라) 성과품 작성단계
  - 마) 준공 시(설계납품 7일전)
- 3)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대표자명)를 작성하고,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설계관련 조사 실시
  - 가) "을"은 설계와 병행하여 필요한 조사를 "을"의 부담으로 하되 필요시 우리의료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을"은 "갑"의 계획의도 및 설계방향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진행 중에 "갑"과 함께 동행하여 선진 기숙사를 견학·조사하여야 한다.
  - 다) "을"은 "갑"의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등 인입여부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라. 과업공정보고

-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설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수시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가) 1차 중간보고 :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시
  - 나) 2차 중간검토 : 실시설계 완료 시
  - 다) 3차 중간검토 : 설계완료 단계 시
    - (1) 성과품 작성 시 구조 등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 관련법 및 시방서 내용 부합여부 등
- 라) 본 과업 수행기간중 발주처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 마. 하도급의 범위

- 1)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도급 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 2) 수급인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시 설계협력업체 명단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때,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각종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 다)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 라)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 마)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바. 자료제출 등

- 1) 수급인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 도중이나 준공 후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사. 설계하자

- 1) 수급인은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제공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산상,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아. 관계기관 협의

- 1) 수급인은 소방시설물에 대하여는 소방관련 법규 내용을 숙지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설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 1)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를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차. 용역설계비 지급

- 1) 본 용역설계비는 추정공사비에 의한 것이므로 설계완료 후 공사금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감액 정산 지급하고, 추정공사비보다 설계 공사금액이 증가 시에는 당초 용역설계비대로 지급한다.

## 카. 각종 조사사항

- 1) 현지답사
  - 가) 수급인은 현지답사를 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기존 건물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으로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및 민원발생시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지장물 조사
  - 가) 공사계획 공간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나)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3) 배수시설조사

- 가) 계획 공간내 하수처리시설을 조사한다.
- 나) 배수시설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소음, 진동조사
  - 시설물설치 전후의 소음, 진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5) 구조물조사
  - 가)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 나) 각종 구조물의 공간내 인접하여 있는 것을 상세히 현장조사 및 설계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 6) 관련법규 검토
  - 가) 본 과업에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하고, 개·보수에 따른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다.
- 7) 기타사항
  - 가) 본 건물 리모델링 계획 시 주변시설에 미치는 영향, 민원야기 예상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5. 일반지침

### 가. 적용기준

-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 2)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4) 특정공법이나 특정제품(자재) 등을 임의로 설계에 반영할 수 없으며, 반영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발주처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유도 등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 나. 발주처와 수급인의 책임 및 의무

- 1)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나) 수급인은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 라) 수급인은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
  -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바) 수급인은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처에게 알려야 한다.
  - 사) 수급인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조건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아)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와 설계용역 착수 시 그리고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구조포함),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등 각 공종 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에 상이 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차)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등 과업 물건이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 요구할 수 없다.
  - 카)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착수
- 가) 수급인은 발주처와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정계획
- 가)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공정표나 네트워크(NET WORK)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처가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 다) 공정계획은 용역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4) 보안책임
- 가) 업무내용의 비공개
    - 수급인은 발주처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이를 공개 또는 복사 유포해서는 안된다.
  - 나)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5) 설계관련 현황 자료
- 가) 발주처의 설계용역관련 현황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 (1) 발주처는 본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나) 수급인의 분석 및 검토
    - (2) 수급인은 성실하게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수급인은 당해 건물현황 실사를 하여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수급인은 건물 내,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6) 기존시설(지장물 등)의 처리
- 가) 수급인은 발주처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존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매설된 구조물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위치 및 규모, 숫자 등을 명백히 파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기존시설물에 대하여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철거 및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공사비와 예산

가)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공사비의 산출(예산 범위 내)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나) 개·보수 위치에 있는 지장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도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 6. 설계지침

### 가.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1) 기존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여부 및 지반조사, 개·보수 건축물 규모, 용도, 구조 등 기본적인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2가지 이상 계획설계안을 제시하여 발주처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3)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검토내용

가) 건축물 배치계획, 규모, 구조, 내·외부마감 재료(기존 마감재료 고려) 검토

나) 각 사업별 층별 평면배치계획

다) 개·보수설계에 따른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

라) 각종 관련법 적합토록 설계반영 여부

마) 기타 사항 등 검토

4)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 비교, 검토내용, 설계기본도서(건축계획서,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동별개요, 각실별 용도 및 면적, 건물 내 마감재료, 설비계획 개요,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변경 전·후의 도면, 건축사의 안전진단확인서 등, 도면은 A3 size(평철 백상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보건복지부(지원센터)의 요구에 대한 건축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심의(1차 심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체

### 나. 실시설계

수급인은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지침

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기준 등 제반사항 및 현장조사 등 관계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본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 품셈,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필요한 마감재료, 패널, 기타 자재 등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실시설계는 조사자료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바)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곳은 이를 고려한 공법이나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시설 후 유지관리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세부설계지침

가) 각종구조물설계

- (1) 각종 구조물은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표준도를 기준으로 구조계산을 하여야 한다.
- (2) 오수 및 배수시설물 등의 설계는 기존구조물과 가장 합리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구조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및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되,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나) 상·하수도설계

- (1) 지하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 배치 및 교차부위를 감안하여 하수관 등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배수설계는 기존수로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배수구조물의 단면결정은 수리계산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3) 배출시설의 여부를 확인 후 기존 배수관로에 연결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4) 관중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다) 건축계획

- (1) 배치계획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시설의 규모, 용도, 기본건물형태 및 동선관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2) 평면, 입면계획 시 자연 채광, 통풍을 최대한 고려되도록 설계한다.
- (3) 건축의 형태 및 내·외부재료 마감은 기존건축물 형태와 조화가 되어야 하고,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4) 각 층별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유기적인 동선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건물 구조는 기존건물구조를 바탕으로 영구적인 구조로 하되 건물의 기능, 구조,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형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6) 신체장애자,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이용에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7) 실의 마감은 실의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선정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을 창출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8) 평면계획 시 국고지원 세부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배경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도 및 시설을 설치한다.

#### ※ 각 사업별 평면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9) 내부평면계획은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부용도 및 실면적을 결정한다.
- (10) 내부평면계획은 상호 실 간의 동선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11) 단면 계획 시 수직동선의 원활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의 천정고는 적정체적을 계산하여 실내 체적감에 의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12) 구조계획은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은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13) 흡음, 방음계획은 실의 기능을 고려하여 내부가 쾌적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라) 설비계획

- (1) 시설별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에너지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2) 전기, 통신, 냉난방, 환기, 위생 등 모든 설비계통은 최신의 시설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보수 비용은 극소화하도록 한다.

#### 마) 전기·통신설비계획

- (1) 전기·통신설비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2) 각종 조명시설은 실·내외의 조형성에 맞도록 계획하고, 실의 용도에 적합한 광원 및 등기구와 실에 맞는 적정조도로 설계하여야 하며, 점등 및 소등관리방식을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3) 통신설비는 전화설비, 방송설비, 약전설비, 유무선통신 등으로 구분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전산설비는 전파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 (4) 컴퓨터 온라인 시대를 대비한 폐쇄회로 설치계획을 검토한다.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6) 구내 통신선로 설비 등은 배관시설을 설치 후 배관교체나 증설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7)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라 각종 사무기기(컴퓨터 등) 설치를 장치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8) 전기, 통신 등 장비용량 및 부하계산을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바) 기계설비계획

- (1)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특히 기자재 선정 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2)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 소방설비계획

- (1) 소방법 및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에 의거 소방설비(자동화탐지설비, 유도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설계도서의 작성

### 가. 설계도서 작성

-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3) 도면상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합여부를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구조확인서 :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의 구조기술사가 날인)
- 5) 모든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디스켓(CD)에 저장 제출한다.
- 6) 시공 적산이 용이하도록 각종 상세 도면을 충분히 작성한다.

### 나. 공사시방서 작성

- 1)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물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계법규 등을 근거로 발주처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2) 일반 및 특기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 등을 기술한다.

가) 각종 자재의 설치방법(가공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나) 각종 구조공법에 관한 사항

다) 관련 공사와의 시공관계 구분

라) 재료 배합과 양생에 관한 사항

- 마)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 바) 특수 공종에 대한 시공 시 유의사항 등

#### 다. 설계예산서 작성

-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으로 구분하고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4) 설계예산서는 설계용역 완료 납품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5) 노임기준은 성과 납품년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조사)를 적용한다.
- 6) 재료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포함한 3개 이상(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행한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의 물가정보지를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 7)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1~2개 업체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은 노동부에서 제정한 보험 요율을 따른다.
- 11) 안전관리비는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 12) 내역서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설비공사, 조경, 인테리어 등으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 13) 외환환율 적용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라. 인·허가 협의서 및 기타 보고서 작성

- 1)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는 용역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우리의료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 2)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청 시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기타사항

- 1) 구조계산서는 구조기술사(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업체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등)가 구조적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서명 날인한다.
- 2)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
- 3) 설계에 의한 공사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 및 보완요구 사항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공사에 상당한 피해가 초래 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8. 성과품 납품

#### 가. 납품시기

- 1)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 2) 실시설계 최종 납품 : 납품기한 7일 이전 납품
- 3)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보고서등)를 최소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나. 성과품 납품부수

| 납품목록                                                                 | 규격           | 부수   | 비고                   |
|----------------------------------------------------------------------|--------------|------|----------------------|
| ○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보고서                                                | A4           | 5부   |                      |
| ○ 실시설계 보고서                                                           | A4           | 5부   |                      |
| ○ 각종 설계원도                                                            | A3           | 1부   |                      |
| ○ 조감도                                                                | 채색 90cm×70cm | 각 1장 | 주요부위 8개소<br>(발주처 지정) |
| ○ 구조계산서(확인서)                                                         | A4           | 3부   |                      |
| ○ 공사시방서                                                              | A4           | 5부   |                      |
| ○ 설계내역서                                                              | A4           | 5부   |                      |
| ○ 일위대가표                                                              | A4           | 5부   |                      |
| ○ 수량산출서                                                              | A4           | 5부   |                      |
| ○ 단가산출서                                                              | A4           | 5부   |                      |
| ○ 설계도면                                                               | A3           | 10부  |                      |
| ○ 각종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약서 포함)                                              | A4           | 5부   |                      |
| ○ 공사예정공정표                                                            | A4           | 5부   |                      |
| ○ 장비용량 부하계산서(전기, 통신, 기계등)                                            | A4           | 5부   |                      |
| ○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                                                       | A4           | 5부   |                      |
| ○ 성과품 모두가 기록된 CD 또는 USB                                              |              | 2장   |                      |
| ○ 기타 인·허가 관련도면 및 서류                                                  | A4           | 소요량  |                      |
| ○ 건축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br>- 심의 서류 일체(전북특별자치도 및 보건복지비(지원센터) 제출서류) |              | 소요량  |                      |

##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역명 :
- 용역기간 :
- 용역회사 :
- 용역참여자(총괄 ·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 연번 | 분야별 |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 |      |    |        |       | 서명<br>(실명) |
|----|-----|---------------|------|----|--------|-------|------------|
|    |     | 참여세부<br>과업내용  | 참여기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증번호 |            |
|    |     |               |      |    |        |       |            |